■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[별지 제48호서식]

(기 관 명)

(전화번호)

제 호

수 신

제 목 체포·구속 통지 등

1. 피의자

성 명:

생년월일:

2. 위 사람을 . . . :

피의사건으로 체포·긴급체포·현행범인체포·구속하여 에 인치구금하였음을 「형사소송법」 제200조의6, 제209조 또는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7조에 따라 통지합니다.

3. 체포·긴급체포·현행범인체포·구속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·배우자·직계친족·형제자매는 각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.

4. 체포·구속된 위 피의자 본인 또는 그 변호인, 법정대리인,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, 동거인, 가족 또는 고용주는 00지방법원(00 지원)에 체포·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첨 부 : 범죄사실 및 체포·긴급체포·현행범인체포·구속의 이유 1부

(기 관 명)

특별사법경찰관 ㊞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